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2 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김도읍·김상훈·구자근

김형동 • 주진우 • 조지연

이성권 · 장동혁 · 강승규

정희용 • 권성동 • 서지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,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 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 게 저하되고 있음. 특히, 지방의 경우 소아 의료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진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·안내·지도 및 진료 병원 안내 등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언제 어디서든 소아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 함. 또한, 나아가 응급 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119구급상황센터의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·안내·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업무 추가(안 제10조의2제2항제7호 신설).
- 나.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·안내·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을 위한 의료기관 정보 활용(안 제10조의2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119구조 ·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119구조 ·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1항 중 "이송에"를 "이송 등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"관련"을 "등을 위한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 · 안내 · 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
- ⑥ 소방청장은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·안내·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을 위하여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행 정 안 개 제10조의2(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제10조의2(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의 설치・운영 등) ① 소방청 의 설치 • 운영 등) ① -----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 ----이송 등에-----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 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 청과 시·도소방본부에 119구 급상황관리센터(이하 "구급상 황센터"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 하여야 한다.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4. -----등을 위한-----설치 및 관리・운영 5. ~ 6. (생 략) 5. ~ 6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7.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 · 안내 •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③ ~ ⑤ (생 략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소방청장은 소아환자에 대 <신 설> 한 상담・안내・지도 및 진료 병원 안내 등을 위하여 「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 용할 수 있다.